

## <붙임 #01. 특별공급 안내문>

#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이상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협용됩니다.
- 2018.10.1. 국토교통부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지정기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02.01.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셔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주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2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등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예정)]에 한화 포레나 홈페이지(<https://www.forena.co.kr>) 또는 대표번호 (1588-6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 덕천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공급규모

지하2층, 지상18~26층 8개동 총 759세대(조합분양 598세대, 보류지 4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57세대

#### ■ 기관 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대상세대수 : 5세대

구분	59A	59B	59C	59C	74B	소계
대상세대수	1	1	-	-	3	5
예비당첨자	3	3	-	-	9	15

####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1.06.25.(금)	견본주택, 일간신문, 홈페이지( <a href="https://hanwha.forena.co.kr/deokcheon2nd">https://hanwha.forena.co.kr/deokcheon2nd</a> )
• 견본주택 개관	2021.06.25.(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31-6 번지(사이버모델하우스운영)
• 특별공급 접수일자	<u>2021.07.05(월)</u>	<u>인터넷접수 원칙 / 08:00~17:30까지</u>
• 당첨자(동호수)발표	2021.07.14(수)	<a href="http://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a> (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 후 게시)
• 계약 체결	2021.07.26.(월)~07.28(수)	당사 견본주택

- ※ 상기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관련 업무의 진행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의 경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협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대상자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완비자에 한하여 예약접수 후 방문이 가능함

## II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6.25.(예정)]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세대원의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중 1인만 신청 가능

### ■ 공급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2개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III |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 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제출서류 (각 1통)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input type="radi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필수 서류	<input type="radio"/>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 신청자 신분증 및 도장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방문접수 받지 않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자침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오픈예정

## FORENA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건설 예상도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건설 예상도

## FORENA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총 795세대 중

일반분양 157세대 59m / 24m

문의 1588.6227

서울 대전 대구의 주택재건축설계사업조합

서울 한화건설

#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PREMIUM 6

**총 1,860세대 브랜드타운**  
3개 구역 총 1,656세대로  
조성 예정인 한화 포레나 미분양도

**3호선 속도역 초역세권**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거리가 남다른 초역세권 포레나임

**최고 가치가 높은 평생권 아파트**  
보선에 지원, 충전과 전로 등  
모든 차별화 편의를 평생권 포레나임

**쾌속 교통망 확충 예정**  
대성도 교통망 확장은 2020년  
제2교량은 2022년 개통 예정

**선호도 높은 총·소형타입**  
수용 가능한 선호도가 높은  
총·소형 타입 / 세미타입 중심 구성

**프리미엄 브랜드 한화 포레나**  
650 일정을 20%에 친화 포레나 1차  
김동면 브랜드 프리미엄

**FORENA**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덕천 新주거 중심, 다시 만나는 최고의 브랜드타운 한화 포레나!**

바로 앞 3호선 속도역 앞서가는 교통특권	한걸음에 누리는 편리한 생활특권	강의 공원을 함께 체憩한 에코특권	도보거리 소중교 우수한 교육특권
죽산 우등역 0.9km, 3호선 청사역 0.7km 여행·교통·체육·상업·문화·환경·생활·인프라 모든 차별화 편의를 평생권 포레나임	한 걸음에 누리는 편리한 생활특권 인근 학교(한화초등학교, 한화중학교) 인근 병원(한화병원, 한화의료원) 인근 시장(한화마트) 인근 편의점(7-Eleven) 인근 음식점(한화식당, 한화카페)	강의 공원을 함께 체憩한 에코특권 450m 거리에 있는 한화강의원 450m 거리에 있는 한화강의원	도보거리 소중교 우수한 교육특권 도보거리 가깝다. 대신도 저렴하고 여행·교통·체육·상업·문화·환경·생활·인프라 모든 차별화 편의를 평생권 포레나임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